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国内事件

商標拒絶査定

〈大法院 第3部 判決〉(1986. 4. 8)

事件番號 : 80 후 54

裁判長 : 윤 일 영

關與法官 : 장 우 영 · 김 덕 주 · 오 성 환

1. 審判請求人(上告人)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0-4 육영천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特許廳長
3. 原審決 : 特許廳 1980. 2. 27字, 1979年 抗告審判(絕) 第107號 審決
4. 主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부담으로 한다.
5. 理由 :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第1點에 대하여

原審決理由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本願商標가 引用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사용될 商標라는 理由에서 不登錄事由에 해당한다고 判斷한 것이 아니라 本願商標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引用商標와 類似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引用商標權者の 商品이나 營業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라고 인정하여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10號의 不登錄事由에 해당한다고 判斷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商品이나 營業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는 비록 그 指定商品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登錄될 수 없는 것이므로 原審決에 指定商品의 類似性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위와 같은 原審決의理由를 잘 못 이해하고 原審決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 이유없다.

第2點에 대하여

原審決이 그 理由에서 本願商標를 引用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하다고 본 다음, 引用商標는 本願商標 出願時(1976. 10. 14)까지 18년여동안 指定商品인 알미늄제 주방용기물에 사용하여 온 商標로서 本願商標 出願이전인 1976. 1. 25부터는 引用商標의 聯合商標로 出願중인 商標를 그 指定商品은 아니지만 本願商標의 지정 가전제품인 전기커피포트, 전기밥솥등에도 사용하면서 영남일보, 티.비.씨. 방송, 엠.비.씨. 방송의 텔레비죤과 라디오등을 통하여 거듭 선전광고를 하여 수요자인 주부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商標이므로 本願商標는 引用商標權者の 商品이나 營業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商標라는 취지로 判斷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终>